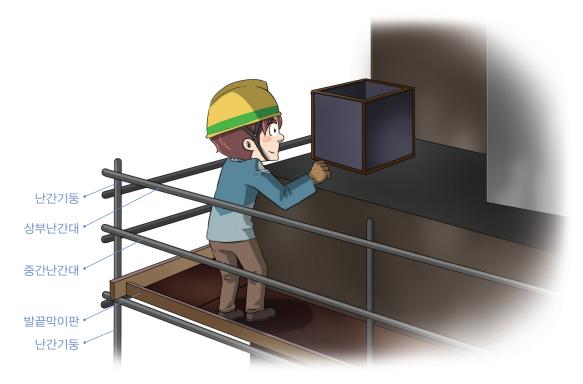




안전난간이란?

안전난간(Handrail)이란 블록의 가장자리나 선체 외판 등에 설치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에 바닥면과 수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작업을 안전하고 편하게 함과 동시에 제품의 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, 상부난간대, 중간난간대,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추락방지 시설을 말한다.



안전난간의 구성 및 구조

- 상부난간대: 바닥면·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
- 중간난간대:
 -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부분에 설치
 - 상부난간대를 120cm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
- 발끝막이판 :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
 - ※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발끝막이판 설치 제외
-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 유지
-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
- 난간대는 지름 2.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
- 임의의 방향에서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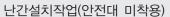


주요 위험요인

추락 위험

- 안전난간 설치작업 중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할 위험
- 안전난간 설치 강도 부족으로 작업자 통행 중 추락 위험
- 중간난간대가 미설치된 족장판 위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난간대 사이로 추락할 위험







도장작업(안전난간 미설치)



고소작업(안전난간 미설치)



💙 낙하비래 위험

- 발끝막이판 미설치로 공구나 자재 등이 낙하할 위험

아저대책

• 추락위험 방지

- 고소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실시
-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중간난간대를 반드시 설치







• 낙하비래 위험

- 물체의 낙하나 비래가 예상되는 곳에는 높이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 설치



재해사례: P/Crane의 받침대 용접상태 확인 중 추락

개요

조선소 내 Deck House P.E장에 설치된 엔진 케이싱 블록의 Deck 끝단부에서 Provision Crane(부식 등 공급용 크레인)의 받침대(Pedestal) 용접상태 확인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



발생원인

● Deck 끝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

E/Casing 블록의 Deck 끝단부에서 Provision Crane의 받침대 용접상태 확인 시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나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

•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미흡

Provision Crane의 받침대 용접상태 확인 등 추락위험장소 작업 시 안전대 사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미실시

예방대책

● Deck 끝단부 안전난간대 설치

엔진케이싱 블록의 Deck 끝단부에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거나 받침대 주위에 작업 발판 및 사다리를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용접상태를 확인, 실시

- 추락방지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
-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

E/Casing 블록의 Deck 끝단부에서 받침대 반대 방향의 용접상태를 확인 시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 작업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





안전수칙

- 안전대를 준비하여 착용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.
- 상부 및 중간난간대, 난간기둥, 발끝막이판 등 모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
- 안전난간대와 난간기둥의 체결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.
- 족장판이나 철판과 난간기둥의 체결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.
- 부식, 변형 및 임의 제작한 난간대는 사용하지 않는다.
- 안전대가 걸려 있는 부분은 탈락 등의 위험은 없는지 정상적으로 걸려 있는지 주의하면서 작업 한다.
- 진동이나 충격 등으로 난간대, 난간기둥의 체결부위가 느슨해지지 않는지 주의한다.
- 난간대를 밟고 올라서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.
- 고소작업발판 주위에는 빠짐없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


관련 범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13조 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 제43조 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 - 제44조 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